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25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48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A 주식회사
	[redacted]
피고, 항소인	1.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	2.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5구합21355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1. 18.
판 결 선 고	2019. 2. 1.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가. 피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4. 7. 2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8,976,000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25

원, 농어촌특별세 26,297,600원, 등록세 278,976,000원, 지방교육세 52,595,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나. 피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4. 7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07,889,140원, 농어촌특별세 47,774,910원, 등록세 507,889,140원, 지방교육세 95,549,8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용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25

판사 김태현

판사 곽병수